

< 조기재취업수당 안내문(취직자용) >

※ 반드시 아래의 안내사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재취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(미경과시 반려 처리)

* 지급요건

- ①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총급여일수의 1/2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일 것
- ② 구직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한 사업장 재취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
(직장을 옮긴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하루도 단절이 없어야 함)
- ③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④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
- ⑤ 수급자격 신청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
- ⑥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부터 7일) 경과 후에 취업한 경우일 것(일용직 수급자격 신청자 제외)

* **제출서류** - 서류 작성 기준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최초 재취업한 사업장 기준

- 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
- ②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(이직한 경우 각 사업장 모두)

* 제출방법

- ① 인터넷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- 개인서비스- 실업급여- 조기재취업수당 청구
☞ 반드시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전송
- ② 팩스: 051-719-4505로 팩스전송 후 콜센터(1350) 전화하여 정상수신 여부 확인
- ③ 방문(또는 우편): (47209)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(양정동) 부산고용센터 1층 실업급여과

☞ 제출하신 청구서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★14일(공휴일 제외)★ 이며
수당 지급 여부는 지급요건 등에 대해 관련서류 검토 후 처리됩니다.

☞ 허위신고, 사업주의 허위증명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거나
받고자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중지,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2배 추가징수, 형사처벌 등
수급자 및 사업주에 연대책임을 부여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* 지급금액

- ▶ 구직급여일액 X 미지급일수의 1/2